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노동부,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

- 노동부는 지난 17일 ‘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’를 개최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.
 -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퇴직연금 활용 모범관행, 최근의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,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퇴직연금 역할,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용방안,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적용 방안 등에 관한 주제를 발표함.
- 특히,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보험설계사·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며 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’ 개정법률(안)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.
 -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현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임.
 - 그러나 현행법상 2011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 적용되고, 국회에 제출된 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’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짐.
 - 다만,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해 불투명한 시장성,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심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됨.
- 이에 발표자(고려대 박지순 교수,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박사)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적기관이 참여하여 낮은 비용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,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매칭해야 한다고 제안함.
 - 중소기업은 복잡한 도입절차, 수수료 부담 등에 따른 상대적인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수사용자 DC형 퇴직연금 도입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및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임.
 -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, 낮은 지불능력, 빈번한 사업장 생성·소멸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강제화, 부담금 차별화, 국가지원을 통한 퇴직연금 운영모델을 도입 예정임.

(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 개최, 노동부 임금복지과장, 12/17)